

第 74 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本 會 議 會 議 錄

( ' 97. 3. 17 ~ 3. 19. )

忠清北道教育委員會

會務會經有得進部忠 風其眾

# 本會會務會務

(91.3.17 - 3.19)

會員交首峰首非龍忠

# 목 차

1997 • 3 • 통권 제52호

I. 제7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3
II. 제7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7
III. 부 록	
1. 의사일정(안) .....	9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	11
3. 교육기관 방문의 건 .....	19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7년 3월 17일 (월요일) 14시 00분

## 議事日程 (제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7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 교육기관 방문의 건

##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이흥무)
2. 제7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기수위원 외 3인위원 발의)
4. 교육기관 방문의 건(이기수위원 외 3인위원 발의)

(사회: 의사과장 이흥무)

(14시 00분 개식)

### ● 의사과장 이흥무

지금부터 제7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바로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14시 02분 개의)

● 의장 박재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경과보고

● 의사과장 이흥무

의사과장 이흥무입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 및 집회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97년 3월 7일 이기수위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같은날 '97-3으로 집회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금회 처리 안건입니다.

금회에는 이기수위원 외 3인이 발의하신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교육기관 방문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 제7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03분)

● 의장 박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통보한 바와 같이 제74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3월 19일까지 3일간으로 하여 위원 발의 의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만, 18일 하루는 교육기관 방문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위원 모두 “없습니다.”하고 말함)

의의가 없으므로 제7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3월 17일부터 3월 1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 규칙안

4. 교육기관 방문의 건

(14시 05분)

● 의장 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교육기관 방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위원을 대표하여 이기수위원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위원 발언대로 나눔)

● 이기수 위원

이기수 위원입니다.

본인 외 3인 위원이 공동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교육기관 방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먼저 본도 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함으로써 운영에 내실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함에 있어 위원의 임기만료로 인해 새로 구성된 최초의 임시회 개회식은 의장·부의장 선거후 행하도록 현 실정에 맞게 명문화 하고 위원이 신병 기타 사고 등의 이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청가 및 결석의 처리 절차와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바라면서 본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교육기관 방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3월에 개교한 신설학교의 교육환경 여건 등 운영실태와 금월중 이전한 학교의 공사 진척 등 이전 준비상황을 파악함은 물론 많은 어려움 속에도 학생지도와 교육환경 여건 조성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을 교직원 등 관계관을 격려함으로써 사기진작을 도모함은 물론 일선 교육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한 교육의정활동의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문 기관은 '97년 3월 17일과 18일 이틀

간이며, 첫째날인 17일에는 상당고등학교를, 둘째날인 18일에는 탄금초등학교와 금가초등학교 현지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 외 3인 위원이 공동 발의한 본 건과 앞서 제안설명 드린 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수위원 자리로 돌아감)

- ▶ 참조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 별첨2
- 교육기관 방문의 건 : 별첨3

● 의장 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이 있는 안건은 본도 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그 내용이 경미하고 간단하므로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의결토록 하고 오늘은 두번째 안건인 교육기관 방문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기관 방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4회-제1차]

<p><b>4.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b> (14시 10분)</p> <p>● <b>의장 박재현</b></p> <p>다음은 금회 회의록 서명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p> <p>순서에 따라 신용철, 안병일 두분 위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p> <p>(“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p> <p>이의가 없으므로 제74회 충청북도교육위원</p>	<p>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신용철, 안병일 두분 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p> <p>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 후부터 내일까지는 금년 3월에 개교 또는 이전 예정 교에 대한 현지 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p> <p>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집행청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p> <p>산회를 선포합니다.</p> <p>(14시 11분 산회)</p>
--	---

0 출석위원 : 11명

의장 박재현, 부의장 조일환, 위원 김정길, 정만재, 이기수, 김광수, 이근수, 신용철, 박동기, 안병일, 이경운.

0 출석공무원 : 13명

교육감 김영세, 초등교육국장 조성근, 중등교육국장 송대현,  
 관리국장 신재철, 공보담당관 김홍묵, 행정관리담당관 정금옥,  
 초등장학과장 김천호, 초등교직과장 노현우, 중등장학과장 이재관,  
 과학기술과장 백경흠, 사회교육체육과장 한상우, 총무과장 고일영,  
 재무과장 이기수.

※ 부 록

- ▶ 의사일정안 : 별첨1
- ▶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 별첨2
- ▶ 교육기관 방문의 건 : 별첨3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7년 3월 19일 (수요일) 11시 00분

## 議事日程 (제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2. 기타안건 처리

##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이흥무)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기수위원 외 3인위원 발의)

(11시 00분 개의)

### ● 의장 박재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1. 경과보고

### ● 의사과장 이흥무

의사과장 이흥무입니다.  
 먼저 전회기 의결안건 처리 결과입니다.

제73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신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3월 18일 제13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처리하실 안건입니다.

금일은 지난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으신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제74회-제2차]

<p>이상입니다.</p> <hr/> <p><b>2.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 규칙안</b></p> <p style="text-align: right;">(11시 02분)</p> <p>● <b>의장 박재현</b></p> <p>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p> <p>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은 일괄 질의후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p> <p>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위원을 대표하여 이기수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p> <p>그러면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p> <p style="padding-left: 40px;">(“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p> <p>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p>	<p>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p> <p>그러면 본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시죠?</p> <p style="padding-left: 40px;">(“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p> <p>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p> <p>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p> <p>그동안 의안 심의와 교육기관 방문 등 위원님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p> <p>그리고 우리 위원회 활동을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p> <p>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7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1시 05분 폐회)</p>												
<p>0 출석위원 : 11명</p> <p style="padding-left: 40px;">의장 박재현, 부의장 조일환, 위원 김정길, 정만재, 이기수, 김광수, 이근수, 신용철, 박동기, 안병일, 이경윤.</p> <p>0 출석공무원 : 12명</p>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 33%;">교육감 김영세,</td> <td style="width: 33%;">초등교육국장 조성근,</td> <td style="width: 33%;">관리국장 신재철,</td> </tr> <tr> <td>공보담당관 김홍목,</td> <td>기획감사담당관 김진성,</td> <td>행정관리담당관 정금옥,</td> </tr> <tr> <td>초등장학과장 김천호,</td> <td>중등장학과장 이재관,</td> <td>과학기술과장 백경흠,</td> </tr> <tr> <td>사회교육체육과장 한상우,</td> <td>총무과장 고일영,</td> <td>재무과장 이기수.</td> </tr> </table>		교육감 김영세,	초등교육국장 조성근,	관리국장 신재철,	공보담당관 김홍목,	기획감사담당관 김진성,	행정관리담당관 정금옥,	초등장학과장 김천호,	중등장학과장 이재관,	과학기술과장 백경흠,	사회교육체육과장 한상우,	총무과장 고일영,	재무과장 이기수.
교육감 김영세,	초등교육국장 조성근,	관리국장 신재철,											
공보담당관 김홍목,	기획감사담당관 김진성,	행정관리담당관 정금옥,											
초등장학과장 김천호,	중등장학과장 이재관,	과학기술과장 백경흠,											
사회교육체육과장 한상우,	총무과장 고일영,	재무과장 이기수.											





(별첨2)

의안번호	제 74 - 1 호
의 결 년 월 일	1997. 3. . (제 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발 의 자	이기수 교육위원 외 3인
제출년월일	1997. 3. 7.

##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74 - 1
----------	--------

발의년월일 : 1997. 3. 7.

발 의 자 : 이기수 교육위원 외 3인

### 제안이유

현행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함으로써 운영에 내실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위원의 임기만료로 인해 새로 구성된 최초의 임시회시 개최식은 의장·부의장 선거후 행하도록 현실정에 맞게 명문화함(안 제2조).

나. 위원이 신병 기타 사고 등의 이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청가 및 결석의 처리 절차와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함(안 제7조).

다. 기타 일부 조문의 자구를 정비함(안 제13조).

### 개정근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5조

### 규칙안 : 덧붙임

###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나.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의 임기만료로 인하여 새로 구성된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위원이 신병 기타 사고로 인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청가는 의장이 이를 허가한다.

③ 위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위원이 신병 기타 사고로 인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회의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위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13조 제4항중 “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위원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 고 사 항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 (생략)</p> <p>제2조(등록 등)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단서신설)</p> <p>③ (생략)</p> <p>제3조 ~ 제6조 (생략)</p> <p>제7조(결석) <u>위원이 신병 기타 사고로 인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미리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p>	<p>제1조 (현행과 같음)</p> <p>제2조(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u>다만, 위원의 임기만료로 인하여 새로 구성된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한다.</u>                      ③ (현행과 같음)</p> <p>제3조 ~ 제6조 (현행과 같음)</p> <p>제7조(첨가 및 결석)                      ① <u>위원이 신병 기타 사고로 인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첨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② <u>위원의 첨가는 의장이 이를 허가한다.</u>                      ③ <u>위원이 첨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첨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첨가의 기간내에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첨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u>                      ④ <u>위원이 신병 기타 사고로 인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⑤ <u>위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회의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소위원 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위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u>                      ⑥ <u>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u></p>

현행	개정안
<p>제8조~제12조(생략)</p> <p>제13조(의안의 동의 등)            ①~③ (생략)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그 원안을 심의하는 동안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 또는 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그 대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회부한다.</p> <p>제14조~제69조 (생략)</p>	<p>제8조~제12조(현행과 같음)</p> <p>제13조(의안의 동의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 . .            . . . . .            . . . . . 위원장은            은 . . . . .            . . . . .            . . . . .            . . . . .</p> <p>제14조~제69조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 관계법령 발췌서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069호)

제15조(회의) ①~③ (생략)

④ 교육위원회의 개회·휴회·폐회·회기 기타 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교육위원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별첨3)

## 교육기관 방문의 건

의안 번호	74 - 2
----------	--------

발의년월일 : 1997년 3월 7일

발 의 자 : 이기수교육위원 외 3인

### 1. 주 문

제7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중 금년 3월중에 개교 또는 이전하는 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방문한다.

가. 방문일자 : 1997. 3. 17(월) - 3. 18(화)/2일간

나. 대상기관(교) : 3교

○ 상당고등학교('97.3.1.개교)

○ 탄금초등학교('97.3.1.개교)

○ 금가초등학교('97.3.29.이전)

다. 방문일정 : 붙임 참조

### 2. 이 유

가. 신설교 교육환경 여건 및 실태 파악

나. 이전 개교 준비상황 파악

다. 교직원 격려 및 사기진작 도모

라. 교육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의정활동 자료 수집

## 교육기관 방문일정

월 · 일	시 간 별	내 용
'97. 3. 17(월)	15:00  15:20  16:30	0 교육위원회 출발  0 상당고등학교 방문  0 교육위원회 도착, 해산
'97. 3. 18(화)	10:00  11:30  12:00  13:30  15:00  17:00	0 교육위원회 출발  0 충주교육청 현황 설명 청취  0 중식 및 이동  0 탄금초등학교 방문  0 금가초등학교 방문  0 교육위원회 도착, 해산